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1년 8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상조, 김수민, 김영호, 김익수, 김춘남,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정하영, 황경환 (11인)

다. 회부일자 : 2011년 8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8월 31일

제1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 상 조 의원

나.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

다. 주요내용

- 기금 조성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의 심의·의결(안 제7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안 제8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미시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1조)임

라. 참고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승 결

○ 본 조례안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코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와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작, 보급을 위해 기금을 운용·관리토록 하였으며
- 또한 기금의 존치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8인 이내의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 기금조성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